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382호
- 다. 제출일자 : 2021. 5. 25.
- 라. 회부일자 : 2021. 5. 31.

### 2. 제안사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영 별표 1 중 일부항목이 삭제·개정됨에 따라 영 별표 1과의 정합성을 위해 조례의 별표를 개정함

### 3. 주요내용

- 가. 영 별표 1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의

부지 내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함  
(안 별표)

1)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발사업의  
부지 내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미실시

2) (개정)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더라도, 개발사업  
의 부지 내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 실시

나. 그 밖에 영 별표 1에 맞추어 조례 별표의 내용을 정비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3. 18. ~ 2021. 4. 07.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 나. 검토의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에서는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계획, 교통수요관리 시행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중 “교통영향평가”는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행위임
- 법 제15조제1항<sup>1)</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sup>2)</sup> 등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sup>3)</sup>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sup>4)</sup>에서 도시의 개

---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하 생략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이하 생략 -

발, 도로의 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및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범위는 법 시행령 [별표 1]5)에서 ‘개발사업, 단일용도 및 복합용도 건축물’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되,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100분의 50이상 범위”6)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 및 건축물 범위 체계는 유지하되 서울시 현실에 맞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현행 조례 제3조 및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음

- 
- 3)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인정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4) “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의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권역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 7)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1.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 이하 생략-

○ 이와 관련하여 '20년도 9월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공공개발 사업 진행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지구 내에 있는 개별 아파트 단지 및 부대복리시설도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sup>8)</sup>된 바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첨 참조]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강화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지연 및 비용 상승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간 공공개발 사업 추진시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단지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단지 내 교통불편 및 사고 위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007호, 2020. 9. 8. 일부개정] 공동주택 내의 교통안전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별 첨]

### ※ 동 개정안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범위

- 아래 표의 대상사업은 종전에는 공공개발 사업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부지 내 공동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었으나 향후에는 교통영향평가 실시

구 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
가. 도시의 개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